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여비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6년 4월 2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76 호

## 군포도시공사 여비규정 일부개정

군포도시공사 여비규정 “별표1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출장지의 구분) 중 ‘별표 1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등 급	운 임			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박당)	식 비 (1일당)
	철 도	선 박	항 공	자동차 (버스)			
제1호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25,000원	실비	25,000원
제2호 그 밖의 직원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5,000원	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100,000, 광역시 80,000, 그 밖의 지역은 70,000)	25,000원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슬 희 ( 3 9 0 - 7 6 4 8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					
<b>[별표1] 국내 여비 지급표</b>					<b>[별표1] 국내 여비 지급표</b>										
등 급	운 임				일 비 (1인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	등 급	운 임				일 비 (1인당)	숙박비 (1박당)	식 비 (1일당)
	철 도	선 박	항 공	자동차 (버스)					철 도	선 박	항 공	자동차 (버스)			
제1호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<u>20,000</u> 원	실비	25,000 원	제1호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<u>25,000</u> 원	실비	25,000 원
제2호 그 밖의 직원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<u>20,000</u> 원	실비 (상한액: 50,000)	<u>20,000</u> 원	제2호 그 밖의 직원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<u>25,000</u> 원	실비 (상한액 서울특 별시 100,000 광역시 80,000 그 밖의 지역은 70,000)	<u>25,000</u> 원